

사료의 기타 표시사항(제10조제1호 관련)

1. 용어의 정의

- 가. “제조연월일”이라 함은 포장을 제외한 더 이상의 제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시점(포장 후 멸균 및 살균 등과 같이 별도의 제조공정을 거치는 사료는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을 말한다. 다만, 소분판매하는 사료는 소분용 원 사료의 제조연월일로, 원 사료의 저장성이 변하지 않는 단순 가공처리만을 하는 사료는 원 사료의 포장시점으로 한다.
- 나.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예시 : 제조일로부터 3월까지) 및 기한(예시 : 2016.12.31까지)을 말한다.
- 다. “품질유지기한”이라 함은 사료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사료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라.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사료를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2. 표시방법

- 가. 표시는 한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의 활자보다 크게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입되는 사료와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의무표시대상이 아닌 제품의 상품명(이하 “제품명”이라 한다), 사료종류 등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표시활자보다 크게 표시 할 수 있다.
- 나. 표시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된 최소판매 단위 제품의 주표시면 면적이 30cm²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판매 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다.
- 다. 최소 판매단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누어 개별포장(이하 “내포장”이라 한다)한 사료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포장별로 사료의 명칭, 등록성분량, 중량,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할 수 있다.
- 라.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로 인쇄하거나 각인(刻印) 또는 소인(消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벌크사료 운반차량 및 탱크로리는 사료의 표시사항을 차 내부에 비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1) 제품포장의 특성상 인쇄, 각인 또는 소인 등으로 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톤백포장, 드럼통, 컨테이너, 합성수지제 용기 등)
 - 2) 통·병조립 및 병제품 등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4) 아무런 표시가 없는 포장재의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 5) 제조업등록 및 성분등록 한 내용이 변경되어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이 수리된 경우와 단순 표시 오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표시사항이 인쇄 또는 기재된 스티커 및 라벨 등을 사용하여 변경사항만을 변경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란 표시내용의 오·탈자, 등록성분의 단위, 사

료의 용도 및 형태의 누락, 주의사항 및 재포장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업소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명칭, 등록성분량,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 중량, 제조(수입)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변경처리 할 수 없다.

6) 제3호아목에 따라 조사처리 관련 문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7) 소량 생산하는 제품 등 특성상 공통된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 다만, 제조(수입)연월일은 제외한다.

마.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주표시면, 일괄표시면(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한다) 및 기타표시면(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 등을 포함한 모든 표시면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세목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 일부 표시사항의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인 또는 압인(壓印) 등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표시장소별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

표시장소	표시사항	활자크기(포인트)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	① 성분등록번호	8 이상
	② 사료의 명칭 및 형태	8 이상
	③ 등록성분량	7 이상
	④ 사용한 원료의 명칭	7 이상
	⑤ 동물용의약품 첨가내용(배합사료에 한함, 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가능)	8 이상
	⑥ 메탄저감제 첨가내용(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가능)	8 이상
	⑦ 사료의 용도(메탄저감제인 경우 괄호안에 “메탄저감제”를 표시하고, 메탄저감제가 첨가된 경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메탄사료로 인정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저메탄사료” 표시)	8 이상
	⑧ 실제 중량	12 이상
	⑨ 제조(수입)연월일 및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10 이상
기타 표시면	① 주의사항	10 이상
	② 제조(수입)업자의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8 이상
	③ 재포장 내용(해당 사항이 없으면 생략가능)	10 이상
	④ 기타사항	6 이상

2) 주표시면(또는 일괄표시면)이 200cm² 이하인 제품의 경우 1)의 표시사항에서 규정한 활자크기보다 2포인트 작게 표시할 수 있다.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내포장한 제품의 표시사항 및 활자크기는 1)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사료의 명칭과 제품명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의무 표시사항과 함께 표시할 경우에는 의무 표시사항은 제품명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별도 구분없이 표시할 경우에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7)에 따라 제품명을 사료의 명칭에 비하여 크게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와 애완(반려)동물용 사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사료 제조업자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사료의 형태 중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2)가)(7)의 그 밖의 형태는 개껌, 껌, 과일, 도넛, 바, 박편, 베일, 생물, 스틱, 시럽, 액상고형, 육포, 젤리, 종실, 칩, 캡슐, 쿠키, 큐브, 페이스트상, 편상, 환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사료의 용도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단미·보조사료는 사료원료용, 양축농가용, 양어농가용, 실험동물용, 애완(반려)동물용, 사육하는 동물용, 관상용수산동물용, 양식용수산동물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병행하여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단미·보조사료가 별표 26의 메탄저감제에 해당하고 메탄저감제의 기능으로 제조·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메탄저감제를 표시해야 한다.

나) 단미·보조사료 중 사료원료용 이외의 용도는 “성장단계 + 동물명”, “성장단계”, “동물명”, “동물종류”로 용도를 표시할 수도 있다.

다) 배합사료는 별표 13에 따른 사용범위를 용도로 표시하거나, 나)를 준용하여 동물명 및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6의 메탄저감제를 첨가하였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정을 받아 저메탄사료로 제조·수입·판매할 경우에는 괄호안에 저메탄사료를 표시해야 한다.

7) 메탄저감제의 첨가내용은 별표 26의 메탄저감제(제품명)와 사용량(첨가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용기나 포장은 다른 제조업자의 표시 및 다른 제품의 표시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용기로서 일반시중에 유통 판매할 목적이 아닌 다른 회사의 사료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사용되는 유리병(같은 사료유형 또는 유사한 사료명칭으로 사용한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삭제 2015.8.21.> (라목5)로 이동)

아. 제조업자의 상호(공장 명칭)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대신 반품교환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사료를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에는 원래 표시 사항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하며, 재포장한 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도 표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재포장한 자의 소재지 대신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 및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차. 수입사료에 대한 표시방법

1) 수출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료의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표시한 표시사항이 있어야 하고, 한글이 인쇄된 스티커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원래의 용기·포장에 표시된 제품명, 원료명,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등 일자표시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표시사항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하여 수입되는 사료의 경우에는 라목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시사항을 스티커 등으로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는 사료성분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 및 소재지를 표시하고, 수입신고한 해당 사료의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을 병행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국명과 제조회사명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으면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한글표시 스티커 등에 당해 제품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3) 자가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사료의 원료인 경우에는 제품명, 사료의 명칭, 사용한 원료의 명칭, 제조회사명과 수입연월일(또는 제조연월일)·유통기간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사료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입되는 사료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용기·포장에 넣어지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

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사료 및 사료원료.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것은 제외한다.

5) 수입연월일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이 표시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6) 외국의 인증마크 중 국내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HACCP 사료공장, 유기농, 친환경 등)은 표시할 수 없다.

7) 수출국의 등록성분 표시사항이 사료성분등록증의 성분량과 비교하여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가려야 한다.

카.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1)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은 제조일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사료인 경우 수출국의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순서가 위의 1) 표시순서와 다를 때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년, 월, 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유통기간의 표시는 유통기간이 1개월 이내이면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유통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유통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제조일로부터 ○○개월까지 또는 ○○년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의 표시는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 해당 제품의 사용 또는 보존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타. 실제 중량(내용량)

1) 실제 중량(내용량)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중량·용량 또는 개수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물이 고체 또는 반고체일 경우 중량(톤·kg·g 등)으로, 액체일 경우 용량(kl·ℓ·ml 등)으로, 고체와 액체의 혼합물일 경우 중량 또는 용량으로 표시하고, 개수로 표시할 때에는 중량 또는 용량을 괄호 속에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급여 전에 버리게 되는 액체(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액체 제외)와 함께 포장되는 사료는 액체를 뺀 사료의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정제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되는 한 용기·포장내의 정제수와 총중량을, 캡슐형태로 제조된 제품의 경우에는 캡슐수와 피포제 중량을 제외한 내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포제의 중량은 내용물을 포함한 캡슐 전체 중량의 50%미만이어야 한다.

파. 살균제품 또는 멸균제품은 “살균제품”, “멸균제품”으로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참고)

하.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사료명칭, 유통기간 등의 표시사항을 알기 쉬운 장소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자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거. 품질유지기한

1) 소비자의 올바른 사료사용을 위하여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는 사료는 품질유지기한을 가급적 표시하여야 한다.

2)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카. 1)부터 5)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

하여야 한다.

3)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사료는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4) 유통기간 또는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는 품질유지기한 표시는 스티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너.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사료(건본품이나 비매품 등)는 사료의 명칭,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유통기간, 주의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

더. <삭제 2015.8.21.>

러.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할 수 있다)

1) 제조일은 “○○년○○월○○일”, “○○.○○.○○”, “○○○○년○○월○○일”, “○○○○.○○.○○” 또는 “유통기한으로부터 ○○월 전 제조”로 표시하여야 하고, 정보표시면에 일괄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제조일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동일제품으로서 국내 내수용과 수출을 동시목적으로 제조된 사료의 경우에는 “○○일○○월○○년”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한다.

2) 수입되는 사료에 표시된 수출국의 제조일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제조일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빠른 제조일 하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머. 등록성분의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별표 13의2 제3호 참조, 권고기준)

1) 최저량(이상)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2) 최고량(이하)에 해당하는 등록성분의 실제측정 값은 가급적 표시량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3) 1)과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 성분량은 “최저량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측정값은 표시 값 이상이어야 하고, 등록 성분량이 “최대량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표시 값 이하이어야 한다.

4) 실제 측정값이 3)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에서 인정하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표시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버.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및 함량

1) 사료의 제조 시 사용한 모든 원료의 명칭(최종제품에 남지 않는 정제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량비율로서 2% 미만인 경우에는 함량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표시할 수 있다.

2) 프리믹스배합사료 및 각종 합제류 등의 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사료의 명칭과 함께 괄호 안에 대표원료 2 ~ 3가지를 표시할 수 있다.

3) 단미사료(광물성사료에 한한다)·보조사료·식품첨가물(이하 “보조사료등”이라 한다)에 대한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료를 제조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보조사료등은 그 명칭과 용도(합성감미료, 합성착색제(또는 합성착색료), 합성보존제(또는 합성보존료), 산화방지제, 표백제, 합성살균제, 발색제, 향미증진제)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예시 : 삭카린나트륨(합성감미료) 등]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5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결

정섬유소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 해당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략명 또는 주용도(중복된 사용 목적을 가질 경우에는 주요 목적을 주용도로 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표 6에서 규정한 주용도(산도조절제, 영양강화제, 유화제, 증점제, 합성착향료, 피막제, 향미증진제, 효소제제 등)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 또는 간략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부터 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가) 유지류는 “유지류 명칭” 또는 “동물성 유지, 식물성 유지(올리브유 제외)”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수소첨가로 경화된 식용유지에 대하여는 경화유 또는 부분경화유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 식물성유지(부분경화유) 또는 대두부분경화유 등]

나) 전분은 “전분명(OO전분)” 또는 “전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단미사료(동·식물성에 한 한다)에 해당하는 원재료 중 개별 원재료의 중량비율이 2%미만인 경우에는 사료종류 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4. 식품원료 분류 1), 2)에서 정한 분류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당해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사료의 원료에서 이행(carry-over)된 보조사료등이 당해 제품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보조사료등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사료의 가공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 제거되는 보조사료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주표시면의 면적이 30cm² 이하인 것은 정제수를 제외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만을 표시할 수 있다.

사)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서. 강조 표시기준

1) “천연”의 표시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며, 합성결착제·인공(조합)향·합성착색제·합성보존제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시가 가능하다.

2) “100%”의 표시는 표시대상 원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상태로 환원하여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환원된 표시대상 원재료의 농도가 100%이상이면 제품내에 보조사료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다.

3) 밀, 호밀, 보리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사료는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다.

4) “저”, “무”, “고(또는 풍부)” 또는 “함유(또는 급원)” 용어의 강조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 9조 및 별지 1의 규정을 준용하여 영양소 함량 강조표시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제조과정을 통하여 해당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5) “덜”, “더”, “감소 또는 라이트”, “강화”, “첨가” 용어 사용

가) 영양소 함량의 차이를 다른 제품의 표준 값과 비교하여 백분율 또는 절대 값으로 표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다른 제품의 표준 값은 동일한 사료명칭 중 시장점유율이 높은 3개 이상의 사료를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나) 영양소의 함량의 차이가 다른 제품의 표준값과 비교하여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아미노산, 열량, 탄수화물, 당류,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의 경우는 최소 25%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나트륨을 제외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 2] 영양소 기준치표에서 정한 비타민 및 무기질의 경우는 최소 1일 권장량의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다) 나)에 해당하는 제품 중 “덜, 라이트, 감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 차이의 절대 값이 4)의 규정에 의한 “저”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하고, “더, 강화, 첨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양성분의 함량차이의 절대 값이 4)의 규정에 의한 “함유”의 기준 값보다 커야 한다.

6) “메탄저감제”, “저메탄사료” 용어는 별표 26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메탄저감제와 이를 첨가하여 제조한 사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메탄사료로 인정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7)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가) 영양소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사료에 해당 영양소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소에 대한 강조 표시 금지

나) 합성착향료를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금지. 다만, 아래 예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 가능

(예시) 원재료로 사과과즙과 착향료를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사과 그림 등을 표시 가능

다) “이온수”, “생명수”, “약수”, “무 방부제” 등의 용어 표시 금지

라) “무 보존제(또는 무 보존료)”, “보존제 무첨가(또는 보존료 무첨가)”, “무 착색제(또는 무 색소)” 등의 표시 금지. 다만, 보존제와 착색제를 직접 첨가하지 않고, 원재료로부터 이행(carry-over)된 보존제와 착색제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표시 가능

8) 특정균 등의 함유사실을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균 등의 함유균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어. 수출사료에 대하여는 수입국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저. 제품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제의 용기 또는 포장지에 대한 포장재질 표시

1) 합성수지제의 재질에 따라 염화비닐수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염화비닐리덴,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페놀수지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폴리스티렌(PS), 염화비닐수지(PVC)가 표시되어 있으면 별도 재질표시 생략 가능

처. 냉동 사료의 표시사항

1) 냉동 사료는 유형에 따라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냉동 사료는 “가열하지 않고 급여하는 냉동 사료”로,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 사료는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 사료”로 구분 표시하여야 한다.

2) “가열하여 급여하는 냉동 사료”의 경우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발효제품 또는 미생물제 첨가 제품은 효모 또는 균수 등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3) 냉동 사료는 해당 사료의 냉동보관방법 및 조리시의 해동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리 또는 가열처리가 필요한 냉동 사료는 그 조리 또는 가열처리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 또는 농산물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육 또는 농산물의 함량을 제품명과 같은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조업체가 냉동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 사료로서의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해동 후 보관 방법 및 주의사항을 주표시면에 1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커. 기타 표시사항

- 1) pH가 4.6 이하인 산성통조림사료는 “산성통조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레토르트(retort) 사료는 “레토르트사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 3) 식육의 특정부위를 사용하는 제품은 식육의 원료육 명칭 뒤에 괄호로 그 부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4) 원재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육의 함량을 해당 표시와 동일한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5) 어분, 육분, 육골분, 가공부산물건조분(계육분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원재료 명칭에 “OO고기”라고 표시할 수 없다.
- 6) 희석·용해하여 급여하는 제품은 그 희석배수 또는 희석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7) 액상 제품 중 400mL 당 열량이 2kcal이하인 제품은 “다이어트”라는 용어를 표시할 수 있다.
- 9) 추출제는 특수용도사료와 혼동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가.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 및 별표 6에 기재된 단미·보조사료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5 및 별표 6, 별표 13 제2호 참조)

- 1) 사료의 명칭을 표시할 때에는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을 먼저 쓰고, 원소 및 화합물의 화학 명칭을 공정에 기재된 영문명으로 명기.
예) 비타민B₁₂ (Cyanocobalamin), 비타민C (Ascorbic acid)
- 2) 유효 성분명 및 함량, 부형물질 등의 명칭 및 함량. 다만, 착향료에 있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가 필요 없다. 또한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량법이 정하여 있지 않은 사료(착향료는 제외한다)의 함량은 함유율을 중량 퍼센트(%)로 표시한다.
- 3) 첨가할 수 있는 배합사료의 종류 및 양
- 4) 보존상의 주의사항은 별표 5 및 별표 6에서 정하여진 보존방법을 기재한다.

나. 삭제

다.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는 혼합된 원료명-은 섬유질류, 곡류, 박류, 강피류, 식품가공부산물류, 기타 원료(구체적 원료 명칭 표시)로 분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13 제4호 참조)

라. 실험용동물 배합사료는 사료공정(사용원료, 제조공정, 수분함량 등)을 달리하여 성분등록 및 제조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13 제5호 참조)

마. 시험연구용의 사료에는 「시험연구용」이라는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바. 양식용 수산동물용 배합사료에서 추가로 표시하는 성분은 사료종류와 배합비율, 원료의 명칭을 아래 예시를 기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사료종류	배합비율	원료 명칭
동물성 단백질류	65% 이상	새우분, 어분, 육분
식물성 단백질류	15% 이하	대두박(탈피), 밀글루텐, 옥수수글루텐, 주정박
곡류	10% 이하	소맥분, 옥수수
유지류	6% 이상	어유, 옥수수유
보조사료 등	4% 이상	결착제, 비타민혼합제, 인산칼슘

주1) 사료종류는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4개 이상의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표시하여야 한다.

주2) 원료명칭은 배합비율이 큰 순으로 2개 이상을 표시하여야 한다.

사.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지대 등 포장지에 “확인받은 동물성 사료”를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확인받지 않은 사료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지대 또는 포장지 등에 “소 등 반추동물에 급여금지” 또는 “소 등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금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아. 조사처리한 사료는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하여야 하며, 포장재 및 용기 등에 조사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9 참조)

1) 활자크기(공통사항) : 7포인트 이상으로 표시

2) 표시장소는 완제품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 조사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경우 “사용한 원료의 명칭”란에 그 조사한 내용을 표시

3) 표시사항은 완제품의 경우 조사처리된 사료임을 나타내는 문구 및 조사도안(☺), 조사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사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가) 개별 원료명과 함께 표시 : 원료명 표시란에 해당 원료명에 괄호로 “조사처리”로 표시[예시: “양과(조사처리)”, “조사처리마늘” 등]

나) 조사처리한 사료 일괄표시 : 조사처리한 원료를 괄호로 하여 일괄표시

[예시 : 조사처리한 원료(감자, 마늘, 양과 등)]

다) 어떤 원료가 조사처리 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처리된 원료 일부 함유” 또는 “일부 원료 조사처리” 등의 내용으로 표시할 수 있다.

자.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비고란에서 표시하도록 기준이 설정된 사항은 표시하여야 하며, 미생물체를 이용해서 발효한 사료 중 그 명칭 앞에 “발효”를 표시한 경우(예 : 발효대두박)에는 균주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3의3 참조).

차. 제12조제4항에 따른 단미사료는 혼합한 사료 또는 물질의 명칭·혼합비율 등을 반드시 표시하고 보관성이 약하거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23 참조)

카. 제12조제6항에 따라 부형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한 부형제의 명칭 등을 반드시 표시하고 보관성이 약하거나 사용상 주의를 요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를 용기 및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별표 24 참조)

타. 법 제15조제2항과 별표 22에 따라 6개월령 이상의 고기소 또는 젓소용 배합사료에 비단백태질소 화합물을 혼합하거나, 양계용 또는 양돈용 배합사료에 염산불용물질을 혼합할 경우에는 그 물질의 혼입량과 주의사항 등을 용기 및 포장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전자 변형 ○○포함 사료” 또는 사용한 원료의 명칭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유전자변형 ○○포함 가능성 있음“이라고 표시할 수 있다.

* “○○”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옥수수, 콩, 감자 등)을 적어야 한다.

하.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방법

- 1) 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한 유효성분명은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함량의 주성분 명칭으로 한다.
- 2) 함량표시
 - 가) 함량은 성분규격의 함량을 화합물 또는 원소의 양 및 단위 또는 역가로 표시되어 있는 양으로 하며 유효성분에 대한 화합물 또는 원소의 양의 표시방법은 표 1과 같이 한다.
 - 나) 함량의 내용을 정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표 2와 같이 화합물 함량 또는 원소 함량으로 병기하여야 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미네랄 함량에 별도로 원소함량으로서 환산량을 병기할 수도 있다.
 - 다) 성분규격에서 함량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제조용 원물의 함유율은 중량%로 표시한다.
 - 라) 착향료에 대해서는 유효성분명 및 함량의 표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마) 단미·보조사료의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의 사용(필요에 따라 사용량의 폭은 인정함)은 첨가목적에 (보존용)이라고 부기하여 표시

[표 1] 유효성분별 함량 표시방법

유효성분명	함량(/kg)		비고
L-라이신 염산염	○○g	(L-라이신 ○○g)	[표 1]-다
L-라이신 황산염	○○g	(L-라이신 ○○g)	
DL-메치오닌	○○g		
DL-메치오닌 수산화 유도체	○○g		
L-트레오닌	○○g		
DL-트레오닌철	○○g	(DL-트레오닌 ○○g)	
DL-트립토판	○○g		
L-트립토판	○○g		
아미노초산(글라이신)	○○g		
DL-알라닌	○○g		
L-알기닌	○○g		
L-글루타민산	○○g		
L-글루타민산나트륨	C ₅ H ₈ NNaO ₄ , H ₂ O ○○g	(L-글루타민 ○○g)	
프로비타민(β-카로틴)	○○g		
비타민A 분말(레티놀분말)	○○단위		
비타민A 유(레티놀오일)	○○단위		
비타민D ₂ (칼시페롤)	○○단위		
비타민D ₃ (콜레칼시페롤)	○○단위		
비타민D분말(칼시페롤분말)	○○단위		
비타민D ₃ 유(칼시페롤오일)	○○단위		
초산 dl-α-토코페롤	초산 dl-α-토코페롤 ○○g		
초산 dl-α-토코페롤	○○g		
초산 d-α-토코페롤	초산 d-α-토코페롤 ○○g		
비타민K ₄ (아세토메나프톤)	○○g		
비타민K ₈ (메나디온이황산수소나트륨염)	○○g		
비타민K ₉ (메나디온이황산수소나트륨염)	○○g		
비타민AD 혼합제	○○단위		[표 1]-가
비타민ADE 혼합제	○○단위	(치아민 ○○g)	
비타민B ₁ (치아민)염산염	○○g	(치아민 ○○g)	
비타민B ₁ (치아민)질산염	○○g	(리보플라빈 ○○g)	

유효성분명	합량(/kg)		비고
비타민B ₂ (리보플라빈)	○ ○ g	(리보플라빈	○ ○ g)
비타민B ₂ 인산에스테르 나트륨	○ ○ g	(피리독신	○ ○ g)
비타민B ₆ (피리독신) 염산염	○ ○ g		
비타민B ₁₂ (시아노코발라민)	○ ○ g		
비타민C(L-아스콜빈산)	○ ○ g	(L-아스콜빈산	○ ○ g)
비타민C(L-아스콜빈산 칼슘)	C ₁₂ H ₁₄ CaO ₁₂ , 2H ₂ O ○ ○ g	(L-아스콜빈산	○ ○ g)
비타민C(L-아스콜빈산-2-인산 에스테르 마그네슘)	(C ₆ H ₆ O ₉ P) ₂ Mg ₃ , 10H ₂ O ○ ○ g		[표 1]-다 [표 1]-다
비타민C 나트륨염	○ ○ g	(L-아스콜빈산	○ ○ g)
비오틴	○ ○ g		
염화칼린	○ ○ g		
엽산	○ ○ g		
니코틴산	○ ○ g		
니코틴산아미드	○ ○ g	(니코틴산아미드	○ ○ g)
D-판토텐산 칼슘	○ ○ g	(D-판토텐산	○ ○ g)
DL-판토텐산 칼슘	○ ○ g	(DL-판토텐산	○ ○ g)
이노시톨	○ ○ g		
염화칼륨	○ ○ g	(K	○ ○ g)
탄산코발트	CoCO ₃ ○ ○ g	(Co	○ ○ g)
황산코발트(건조)	CoSO ₄ ○ ○ g	(Co	○ ○ g)
황산코발트(결정)	CoSO ₄ , 7H ₂ O ○ ○ g	(Co	○ ○ g)
황산동(건조)	CuSO ₄ , nH ₂ O ○ ○ g	(Cu	○ ○ g)
황산동(결정)	CuSO ₄ , 5H ₂ O ○ ○ g	(Cu	○ ○ g)
펩타이드동	○ ○ g	(Cu	○ ○ g)
황산제1철(건조)	FeSO ₄ , nH ₂ O ○ ○ g	(Fe	○ ○ g)
황산제1철(결정)	FeSO ₄ , 7H ₂ O ○ ○ g	(Fe	○ ○ g)
푸말산제1철	C ₄ H ₂ FeO ₄ ○ ○ g	(Fe	○ ○ g)
펩타이드철	○ ○ g	(Fe	○ ○ g)
구연산철	C ₆ H ₅ FeO ₇ , H ₂ O ○ ○ g	(Fe	○ ○ g)
호박산구연산소다제1철	○ ○ g	(Fe	○ ○ g)
요오드산칼륨	KIO ₃ ○ ○ g	(I	○ ○ g)
요오드화칼륨	KI ○ ○ g	(I	○ ○ g)
요오드산칼슘	Ca(IO ₃) ₂ ○ ○ g	(I	○ ○ g)
산화마그네슘	MgO ○ ○ g	(Mg	○ ○ g)
황산마그네슘(건조)	MgSO ₄ , nH ₂ O ○ ○ g	(Mg	○ ○ g)
황산마그네슘(결정)	MgSO ₄ , 7H ₂ O ○ ○ g	(Mg	○ ○ g)
탄산마그네슘	(MgCO ₃) ₄ Mg(OH) ₂ , 5H ₂ O ○ ○ g	(Mg	○ ○ g)
탄산망간	MnCO ₃ ○ ○ g	(Mn	○ ○ g)
황산망간	MnSO ₄ , nH ₂ O ○ ○ g	(Mn	○ ○ g)
펩타이드망간	○ ○ g	(Mn	○ ○ g)
인산일수소칼륨(건조)	K ₂ HPO ₄ ○ ○ g	(P	○ ○ g)
인산이수소칼륨(건조)	KH ₂ PO ₄ ○ ○ g	(P	○ ○ g)
황산칼륨	K ₂ SO ₄ ○ ○ g	(K	○ ○ g)
아셀렌산나트륨	Na ₂ SeO ₃ ○ ○ g	(Se	○ ○ g)
셀렌산나트륨	Na ₂ SeO ₄ ○ ○ g	(Se	○ ○ g)
탄산수소나트륨	(NaHCO ₃) ○ ○ g	(Na	○ ○ g)
황산나트륨(건조)	Na ₂ SO ₄ ○ ○ g	(Na	○ ○ g)
인산일수소나트륨(건조)	NaH ₂ PO ₄ ○ ○ g	(P	○ ○ g)
인산이수소나트륨(결정)	NaH ₂ PO ₄ , 2H ₂ O ○ ○ g	(P	○ ○ g)
탄산아연	ZnCO ₃ ○ ○ g	(Zn	○ ○ g)
산화아연	ZnO ○ ○ g	(Zn	○ ○ g)
황산아연(건조)	ZnSO ₄ ○ ○ g	(Zn	○ ○ g)
황산아연(결정)	ZnSO ₄ , 7H ₂ O ○ ○ g	(Zn	○ ○ g)
황산아연메치오닌	○ ○ g	(Zn	○ ○ g)

유효성분명	함량(/kg)	비고
펩타이드아연	○○g	C5H11NO2S ○○g)
아밀라아제	○○전분당화력단위	(Zn ○○g) 최대효소활성을 나타내는 pH값
알카리성프로테아제	○○단백소화력단위	○○
키시라나제	○○키시란당화력단위	"
펙티나아제	○○펙틴액화력단위	"
산성프로테아제	○○단백소화력단위	"
셀룰라제(I)	○○섬유붕괴력단위	"
셀룰라제(II)	○○섬유당화력단위	"
중성프로테아제	○○단백소화력단위	"
피타아제	○○피틴산분해력단위	"
락타아제	○○락타제단위	"
리파아제	○○지방소화력단위	"
에톡시킨	○○g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g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g	
프로피온산	○○g	
프로피온산칼슘	○○g	
프로피온산나트륨	○○g	
초산	○○g	
안식향산	○○g	
구연산	○○g	
인산	○○g	
소르빈산	○○g	
DL-주석산	○○g	
L-주석산	○○g	
푸말산	○○g	
개미산	○○g	
아르긴산	○○g	주) 7
카제인나트륨	○○g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g	주) 7
폴리아크릴산나트륨	○○g	주) 7
폴리옥사에틸렌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	주) 7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g	주) 7
자당지방산에스테르	○○g	주) 7
소르빈산지방산에스테르	○○g	주) 7
폴리옥사에틸렌소르빈산지방산에스테르	○○g	주) 7
프로필렌글리콜	○○g	
아스타키산틴	○○g	
칸타산틴	○○g	
아포카로텐산에스테르	○○g	
착향료	○○g	주) 8
감미료(화학명칭)	○○g	
조미료(화학명칭)	○○g	
미생물제(유익균)	○○×10n CFU/g	
미생물제(유익곰팡이)	○○×10n CFU/g	
미생물제(유익효모)	○○×10n CFU/g	
DL-메치오닌수산화유도체 칼슘염	○○g	
미생물제(박테리오파지)	○○×10n PFU/g	

주 1) 함량란 중 g은 백분율(%) 또는 mg 등도 가능

2) 미네랄류의 함량을 원소표시(병기)하는 경우는 상기 함량란의()의 예에 의할 것

3) 단일제제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로 표시할 수 있음

- 4) 비고란은 표 1의 구분임
- 5) 함량란에 ()안의 분자식은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붙일 수 있음
- 6) 메나디온아황산수소나트륨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C_{11}H_8O_2$, $NaHSO_3$, $3H_2O$ 를 함량에 병기할 것
- 7) 단일제제는 원제의 함유율을 중량 %로 표시할 것
- 8) 착향료의 유효성분명은 착향료로 표시할 수 있음
- 9) 유효성분명에 나열되지 않은 사료는 해당 사료의 범위와 동일한 품명의 기준을 따른다.
- 10) 미생물제(유익균, 유익곰팡이, 유익효모, 박테리오파지)의 함량은 CFU/g 또는 PFU/g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1) 효소제의 함량(역가)는 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표 2] 함량의 구분 표시방법

구분	유효성분명	함량
가. 광물질중 유효성분명으로 건조 형태와 결정 형태로 있는 것	황산아연(건조) 황산아연(결정)	ZnSO ₄ ()g <Zn ()g> ZnSO ₄ , 7H ₂ O()g <Zn ()g>
나. 함량이 원소의 양인 것	탄산아연(건조) 탄산마그네슘	Zn()g Mg()g
다. 함량이 수화물의 양인 것	L-아스코빌산칼슘 L-글루타민산나트륨	C ₁₂ H ₁₄ CaO ₁₂ , 2H ₂ O()g C ₅ H ₈ NNaO ₄ , H ₂ O()g
라. 기타(가부터 다. 이외의 것)	에톡시킨 비타민A분말 푸말산제1철 펩타이드철	()g ()단위 ()g <Fe ()g> ()g

4. 허위 및 과장 표시·광고의 범위(외국어로 표시·광고한 것을 포함한다)

- 가. 법 제8조에 따른 제조업등록과 법 제12조에 따른 성분등록에 따라 등록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나. 법 제16조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표시한 명칭 및 표시·광고
- 다.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1) “사료”는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 할 수 없음
 - 2) <삭제 2015.8.21.>
 - 3) 표시·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예시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II. 표시·광고에 관한 일반지침 -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광고 기준 참고
 -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 의약품을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기계·장치 제외)으로 정의하고 있어 빈혈예방, 고혈압예방 등의 표

현을 사용할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약사법」 제61조제2항에서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

마. 제조방법,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바.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학·사료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축산학·사료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는 제외한다.

사.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2)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아.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자.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나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원료·등록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체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차.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 소비자가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파의 2. <삭제>

하. 허위 및 과장 표시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광고의 범위

- 1) 동물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 2) 동물의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3) 동물의 특정질병을 지칭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권장 내용의 표현. 다만, 당뇨병·변비·암 등 특정 질병을 지칭하거나 질병(군)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이나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의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사료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사료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가) 특수용도사료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령동물의 영양보급, 아픈 동물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나)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동물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 다)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
- 6) 사료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가) 해당 사료가 어린동물, 아픈동물 등으로 급여하는 특수용도사료라는 표현

나) 해당 사료가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노령기 등 동물의 특정 성장단계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사료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7) 해당 제품의 사료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급여방법 또는 급여량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8) <삭제>

5. 주의사항 표시

가.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나. 냉동 유통되는 사료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만, 제조업자가 냉동된 사료를 해동하여 출고할 때에는 “이 사료는 냉동된 사료를 해동한 사료이니 재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표시

다. 수분함량이 14%를 초과하는 배합사료와 수분함량이 12%를 초과하는 단미·보조사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사료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라. “윈터치캔” 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마. 누구든지 사료에는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을 포함)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삭제 2015.8.21.> (제2호로 이동)

사. <삭제 2015.8.21.> (제2호로 이동)

아.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 보조사료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급여하거나 음용시키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 표시

자. 폴리스티렌, 펄라민수지, 페놀수지 및 요소수지 재질의 용기·포장재는 가열·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표시

6. 표시사항 예시

<예시1>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ABCD1234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사료의 형태 : 가루사료
- 등록성분량

성분명	인	조단백질	칼슘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2.0%	11.5%	5.0%	6.0%	18.5%	15.0%
	이상	이상	이상	이하	이하	이하

- 실제 중량 : 25kg
- 제조 연월일 : 2015.01.20.
- 유통기간 : 제조일로부터 6월까지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기타 : 유전자변형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밀기울, 쌀겨, 계분
- 사료의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빨리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시2>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EFGH5678
- 사료의 명칭 : 효소제합제
- 사료의 형태 : 가루사료
- 등록성분량

성분명	키시라나제	β -만난아제	산성프로테아제
성분량	750천U	250천U	500천U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키시라나제, β -만난아제, 산성프로테아제
- 사료의 용도 : 배합사료 원료용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 실제 중량 : 25kg
- 수입 연월일 : 별도표기
- 유통기한 : 2016.12.31까지
- 수입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기타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예시3>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IJKL9123
- 사료의 명칭 : 애완육성개사료1호
- 사료의 형태 : 액상고형물사료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 이상	2.0% 이상	0.2% 이상	0.5% 이상	0.4% 이하	3.0% 이하	20.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양고기, 대두유, 미량광물 질류 합제(대표 원료 2~3가지 정도 표시), 비타민합제(대표 원료 2~3가지 정도 표시)
- 사료의 용도 : 생후 9개월 이상의 성견용
- 실제 중량 : 100g

- 제조 연월일 : 제품측면 표시
- 유통기간 : 제품측면 표시
- 제조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기타 : 유전자변형공 포함 가능성 있음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고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후 빨리 사용하기 바랍니다.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예시4>

-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 MNOP4567
- 사료의 명칭 : 혼합성단미사료
- 사료의 형태 : 육포사료
- 등록성분량

성분명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성분량	65.0% 이상	7.0% 이하	0.4% 이하	3.0% 이하	24.0% 이하

- 사용한 원료의 명칭 : 돈피, 치즈, 고구마
- 사료의 용도 : 애완견 간식용
- 실제 중량 : 100g
- 수입 연월일 : 별도표기
- 유통기한 : 2016.12.31까지

- 수입업자 : 상호(공장 명칭) · 주소 및 전화번호
- 재포장 내용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기타 : 해당없음(또는 생략 가능)
- 주의사항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 냉장보관하면서 가급적 빨리 급여하십시오.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소, 사슴 등 반추동물에게는 급여하지 마십시오.

7. 기타 표시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